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0 발의연월일 : 2025. 2. 12.

발 의 자:이인선・이종욱・고동진

최은석 • 정성국 • 조경태

조지연 · 성일종 · 정동만

김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

이에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 13조의4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"2025년 12 월 31일"을 각각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의4(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제13조의4(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재・부품・장비전문기업 주식 재 · 부품 · 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-----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 1.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・ 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(이 하 이 조에서 "투자대상기업" 이라 한다)에 2025년 12월 31 -----2030년 12월 31 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.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

한회사((이하	0]	조여	게서	" स्]처
기업출	자유한	회기	\}"ī	4	한	다)
또는	신기술	술시	업-	금융	업지	ŀ가
벤처투	자조합	등	<u>)</u> =	통히	 •	투
자대상:	기업에	<u> 20</u>)251	년 1	2월	31
<u>일</u> 까지	출자	함으	로	써	취득	한
주식등						

- 3.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(이하 이 조에서 "기금운용법인등"이라 한다)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
- ② (생략)
- ③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 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④ (생 략)

<u>2030년 12월 31</u>
<u>일</u>
3
<u>2030년 12월</u>
31일
② (현행과 같음)
3
<u>2030년 12월 31일</u>
④ (현행과 같음)